

제 3 5 5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444.6090

1973. 3. 22.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36 호	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허가	3
제 38 호	도시계획시장시설(용지)변경	4
건설부고시(서울)제 8 호	건설부서울종치지구(추가)	
	지적승인고시	4

◎ 공 고

제 47 호	도시계획도로일부변경	5
제 50 호	도시계획학교시설결정(서울교육대학)	6
제 51 호	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(추가분)	7
제 52 호	도시계획공원일부변경	8
제 53 호	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	8

◎ 사 령..... 9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 호

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허가

1. 건설부고시제 282 호 (72.7.11) 로
시설결정된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
의 시행자 허가를 도시계획법제 24
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
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
같이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
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
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
인에게 보입니다.

1973.3.21
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동작동 307 번지의 3 필지
2. 사업의종류및명칭
종류 :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
명칭 : 반포지구주택지조성사업
3. 사업시행자주소성명 :
시내서대문구충정로 2 가 185-10

대한주택공사 사장 최 주 종

4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
착수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 주
: 일이내

준공 : 1974.12.31.

5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생략
6. 조 건

가. 도시계획법 시행령제 25 조 규
정에 의한 건설부령의 제정으로
인하여 요구되는 보완사항이 있
을때에는 즉시 추가 제출하여야
한다.

나.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28조
및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정하는
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
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
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다. 도시계획법 제 78 조 규정에 의한
법령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.

라. 이사업 시행에 있어 감독청이
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시설
이 설치와 기타 행정명령을 이의
없이 준수하여야 한다.

마. 이 허가로 사업을 시행할 수
없으며 별도 사업실시계획을 인가
받아야 시공할 수 있다.

첨부 : 계획도면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38 호

도시계획시장시설(용지)변경

1. 도시계획 시장시설(용지)변경
(해제)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
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제 6 조 제
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
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
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
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3. 3. 21.

서울특별시장

시장시설용지해제조서

사업명	위 치	시설면적	비 고
시 장	서대문구연희동 229-36	1,828	시장용지전부해제

별첨 관계도면참조

(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)

◎ 건설부고시(서울)제 8 호

건설부서울풍치지구(추가)

지적승인 고시

서울풍치지구 결정을 다음과 같이
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.

관계도서를 서울시청 및 관할 구
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
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3. 3.

건설부장관

가. 서울풍치지구 지적승인조서(추가)

구 분	위 치	면 적
신 설	영등포구시흥동, 온수동, 궁동, 오류동, 부천군 오정면 각 일부지역	5.55 km ²

별첨 도면표지와 같음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

공 고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47 호

도시계획도로일부변경

1. 도시계획도로인 대 3 - 46 호가 건설부고시 제 73 호 (73.2.28) 로 일부변경 결정고시 되었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

다

가. 도로변경 결정조서

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.

1973. 3. .

서울특별시장

음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기 점	중 점	비 고
기정	대로	3	46	25	3,750	중곡동대3-47	성수2가중1-55	광로 5와 대로2-25구간의 폭을35m
변경	"	3	46	25-35	3,750	"	"	로변경(연장1,147m)

나.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건설부 (서울) 고시 제 6 호

서울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

1. 서울도시계획 가로결정에 따라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.

2.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.

1973. 3. .

건설부장관

가. 로선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중 점	비 고
신설	대로	3	46 ^m	25-35 ^m	3,750	중곡동대로3-47	성수동2가중1-55	광로 5와 대로2-25사이 1,147m 폭원 35m

나.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0 호

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
(서울교육대학)

1. 서울도시계획학교 시설결정이 전설부고시제 76 호 (73.2.28) 로 결정 고시 되었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

같이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

1973. 3. 19.

서울특별시장

가. 학교시설결정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신설	서울교육대학	영등포구서초동일부지역	84,621	부속국민학교포함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.

◎ 전 설 부 고 시 (서울) 제 7 호

도시계획 학교시설지적승인

1. 전설부고시제 76 호 (73.2.28) 로 학교시설결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3.3.19

전 설 부 장 관

가. 학교시설결정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신설	서울교육대학	영등포구서초동일부지역	84,621	부속국민학교포함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.

공

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51 호

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(추가분)

건설부 고시 제 85호(73.3.31)로

결정 및 지적승인한 당시 개발제한 구역
지적을 도시계획법 제13조 제5
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다음과 같
이 공고한다.

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
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
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
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3. 3 . . .

서울특별시 장

첨부 건설부 고시 제 85호 사본 1부

1, 서울개발 제한구역 지적승인 조서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
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보관

◎ 건설부고시제 85 호

건설부 고시 제 385호(72.8.25)

로 결정한 서울개발 제한구역에 대
한 지적을 다음과같이 승인하였기
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서울시청, 경기도
청 및 관계군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
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3. 3. 3..

건설부장관

위	치	면	적
서울시, 의정부시 양주군, 장흥, 별내, 구리, 미금, 진건면 광주군, 동부, 서부, 중부, 대왕, 낙생면 시흥군, 안양읍, 과천, 서면 부천군, 소사읍, 소래, 오정, 계양면 김포군, 고촌면 고양군, 지도, 원당, 신도, 벽지면 각 일부지역		507.95	km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시청, 경기도청 및 관계군청에 보관			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52 호

도시계획공원 일부변경

당시 관내, 응봉공원이 건설부 고시 제 81 호 (73.3.2) 로 변경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.

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3. 3. .

서울특별시 장

도시계획공원 변경 결정 조서

번 호	공 원 명	위 치	기 정 면 적	변 경 면 적	변 경 후
6	응 봉 공 원	한남, 금호, 신당 행당동 일부지역	768,125㎡	(감) 3,137㎡	764,988㎡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시민 봉사실에 보관.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53 호

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변경

당시 관내 능동 어린이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 고시 제 72 호 (73.2.28) 로 용도지역이 변경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.

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3. 3. 21.

서울특별시 장

도시 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

지 역 별	면 적 (㎡)		
	기 정	변 경	변 경 후
주 거 지 역	325,557,232	(감) 1,040,612	324,516,620
주거전용지역		(증) 1,040,612	1,040,612
상 업 지 역	17,134,004		17,134,004
공 업 지 역	47,059,500		47,059,500
녹 지 지 역	331,125,264		331,125,264
계	720,876,000		720,876,000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.

사 령

◎ 1973.3.20

성동구보전소 조건부지 이 증 법
(소장직무대리) 방의무기과 영 등 포구 조건부지방 이 무 부
시보근무를 명함 (73.3.

16-73.5.15)

지방방의무기과에 임함 (73.

5.16) 자

3호봉을 급함

성동구보전소근무를명함

구획정리 2과 지방토목기원보 이 우 길

복직을 명함

구획정리 제 2과근무를명함

4호봉을 급함

영 등 포구 조건부지방 이 무 부
건축기사보
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

2호봉을 급함

영등포구근무를 명함

영등포수원 지방토목기사 김 한 익
지 사 무 소

보광동수원지사무소근무

를 명함

영등포구수 지방토목 조 광 치
도 사 업 소 기사보

급수과근무를 명함

마포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 기사보	심 회 순	방 호 과 지방행정사무관 이 유 성
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		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
대현산배수지 지방토목 사무소 기사보	신 휘 식	중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이 원 표
마포구수도사업소 근무 를 명함		직위해제사유변경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3 호 규정에 의하여 그직위를 해제함
보광동수원 지방토목 지사사무소 기사보	한 규 섭	성 북 구 지방행정주사 이 경 섭
노량진수원지사사무소 근무를 명함		역청사업소 근무를 명함
노량진수원 지방토목 지사사무소 기사보	신 덕 현	영 등 포 구 지방행정주사 이 결 호
영등포수원지사사무소 근무를 명함		성 북 구 근무를 명함
세 정 과 지방행정서기	조 회 열	한 강 건설 지방시설 사업소 부기감 윤 진 우
녹지과파견근무를 해제함		건설국 겸무를 명함
보건행정과 지방보건기사	김 상 봉	성 북 구 청소과장(지 방행정사무관)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	방 준 환
도시가스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	최 두 환	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
연료과근무를 명함		제 1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위를 해제함
성동구보건소 지방약무기원	신 대 응	지 동 차 운 수 기 한 부 공 무 원 사 업 소 (4 을 상 당)
영 등 포 구 보 건 소 근무를 명함		조 찬 응
마 포 병 원 지방보건기사보	이 재 홍	기 한 만 료 로 인 하 여 그 직 을 면 함
마 포 구 보 건 소 근무를 명함		
마 포 구 보 건 소 지방보건기원보	이 광 진	
마 포 병 원 근무를 명함		
서울 특별시 장		